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3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18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3. 18(수)	담당부서	혁신지원팀
담당과장	김태권 팀장(044-203-4630)	담 당 자	백숙자 사무관(044-203-4631)

수출 창업기업,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

- 입주요건을 입주 후 5년까지 달성하도록 조건 완화해 입주기업 모집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성윤모)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을 모집한다.

○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수출비중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하나,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.

○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,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올 3월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한다.

*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3월말까지 공고 게시 예정

□ 현재, 창업지원이 자금·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 이후 제품의 본격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부지 또는 건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○ 이러한 입지난을 최소비용(주변 임대료의 15~30% 수준)으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여 지원한다.

□ 이를 위해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고,

* 입주요건은 중소기업의 경우, 수출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%, 지식서비스업종은 5% 이상

○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를 제공하며, 수출·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"자유무역지역의 입지, 수출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" 언급하며,

○ "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□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,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'평가위원회'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.

【참고 1】 수출 창업기업의 입주조건 완화 주요내용
【참고 2】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현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백숙자 사무관(☎ 044-203-46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수출 창업기업의 입주조건 완화 주요내용

□ **(현황)** 창업지원은 현재 자금 · R&D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R&D이후 제품의 본격생산을 위한 생산활동 입지 지원은 부족

○ 자유무역지역은 입지, 수출 · 사업화 지원이 가능하나, **창업기업은 입주요건인 수출비중(제조 30%, 지식서비스 5%) 달성이 어려운 상황**

□ 주요내용

○ **(입주조건) 수출을 지향하는 유망 창업기업*을 예외입주대상으로 지정**하여 **입주 後 5년이내 입주요건 달성을 조건**으로 **입주 허용**

* 정의 : **글로벌화 비전과 전략**을 보유하고 **향후 5년 이내 입주요건 달성(수출비중이 제조업 30%, 지식서비스업 5% 이상)** 가능한 설립 7년 이하 **창업기업**(중소기업창업지원법)

* 대상 : **제조업,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**의 창업기업

* (기존) **입주前, 수출비중 등 입주요건 충족** → (변경) **先입주, 5년 이내 입주요건 달성**

○ **(지원내용) 입지 제공, 수출 · 사업화 지원**

- **(입지)** 최소비용(재산가액 · 공시지가 1% 수준, 주변 임대료 15~30%)으로 임대 건물(표준공장)과 부지를 제공

* 임대건물을 우선 제공, 부지는 건물 입주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 허용

- **(수출 · 사업화)** 해외마케팅, 시개단 파견, 시제품 제작, 컨설팅 등 기업수요 기반 맞춤 지원

* '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' : '20년, 35억원

○ **(계약조건 위반시 제재) 시정명령**(1년 유예) 후 시정기간까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**입주계약 해지** ☞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(계약해지) 적용

□ 선정절차

○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(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)로 모집공고 → '입주기업 평가위원회'심의 → 입주기업 선정 · 계약체결

참고 2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현황

가. 개념

○ **(목적)** 수출 확대, 외투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 · 물류 · 유통,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

○ **(특징)** 정부가 기반(부지 등)을 조성한 후 **임대방식으로 운영**

○ **(혜택)** 입주기업에게 **관세유보, 저렴한 임대료** 등 인센티브* 제공

나. 지정 및 운영 현황

○ **13개 지역 지정 · 운영, 총 면적 31.3㎢** (19.12월)

* **산단형(7개)은 산업부, 항만형(5개)은 해수부, 공항형(1개)은 국토부** 관리

구 분		지정일	면 적	비고
산단형	마 산	'70. 1. 1	0.96㎢	■관리권자 - 산업부 ■관리기관 - 관리원
	군 산	'00.10. 6	1.26㎢	
	대 불	'02.11.21	1.16㎢	
	동 해	'05.12.12	0.25㎢	
	율 촌	'05.12.12	0.34㎢	
	울 산	'08.12. 8	0.82㎢	
	김 제	'09. 1. 6	0.99㎢	
항만형	부 산 항	'02. 1. 1	9.36㎢	■관리권자 - 해수부 - 국토부 ■관리기관 - 해양청 - 항공청
	광 양 항	'02. 1. 1	8.88㎢	
	인 천 항	'03. 1. 1	1.96㎢	
	포 항 항	'08.12. 8	0.84㎢	
	평택당진항	'09. 3.30	1.43㎢	
공항형	인 천 공 항	'05. 4. 6	3.05㎢	
합 계			31.3㎢	

